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난임휴직 도입 및 국가의 난임휴직급여 지급 근거 마련 >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11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난임휴직 도입 및 국가의 난임휴직급여 지급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간의 체질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일 간의 난임치료 휴가만으로는 그 목적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난임휴직 도입 및 국가의 난임휴직급여 지급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난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하는 한편, 국가가 재정 또는 사회보험 재원으로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난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난임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4(난임휴직) ① 사업주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등 난임치료를 위하여 휴직(이하 “난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난임휴직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

<신 설>

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난임휴직의 기간 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 난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복직 후의 처우에 관한 사항, 난임휴직 실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난임휴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난임휴직 기간”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난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난임휴직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난임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난임휴직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37조(벌칙) ① (생략)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의2. (생략)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음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 9. (생략)

③ (생략)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난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난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3항(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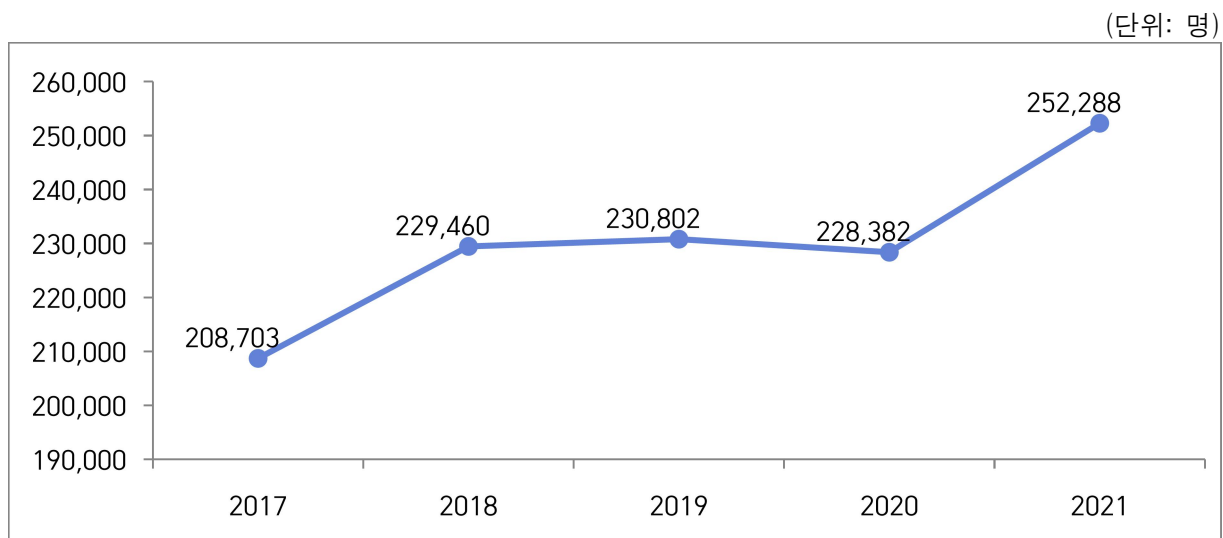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6. (생략) 제39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u><신설></u> 4. ~ 9. (생략) ④·⑤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항(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5.·6.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18조의4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4. ~ 9.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근로자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음.¹⁾

그런데 초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난임 환자 수는 2021년 252,288명으로 2017년의 208,703명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017~2021년 난임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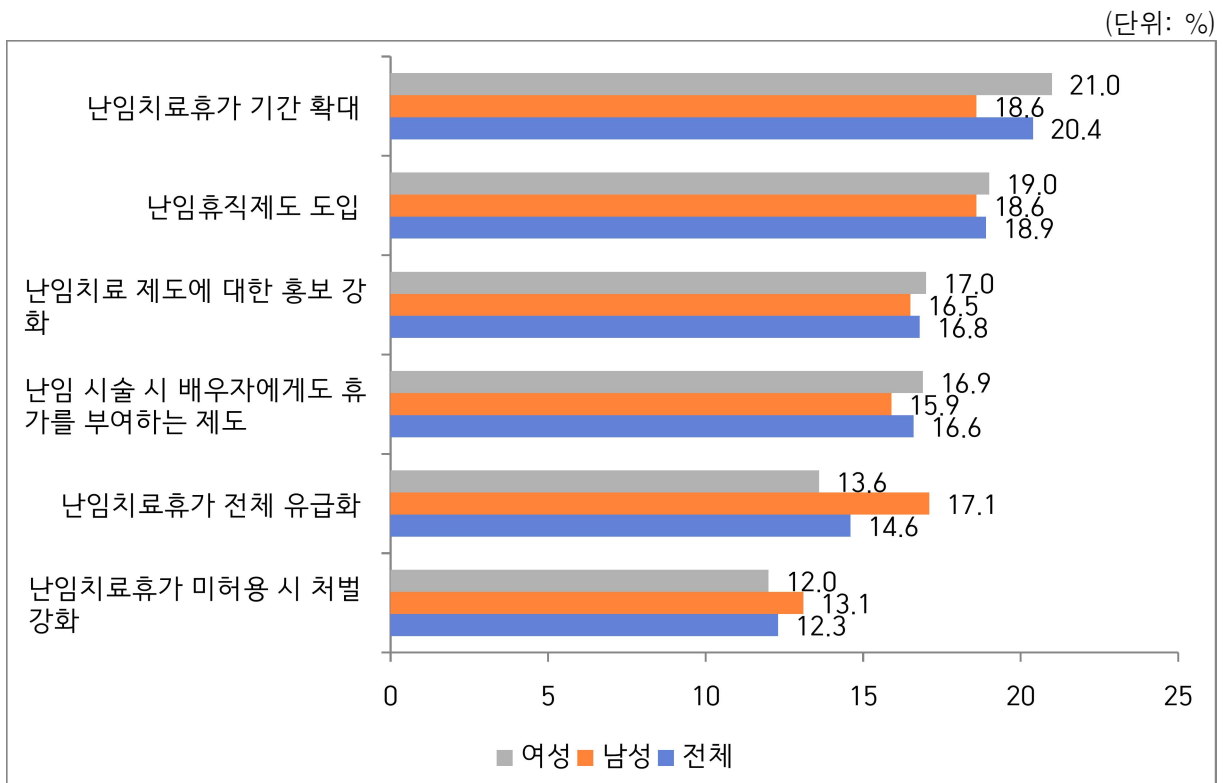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202

- 1)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1순위를 기준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와 ‘난임휴직제도 도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0.4%와 18.9%로 현행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이 짧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선 사항(1순위)



※ 1) 본 조사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는 25~44세 남녀 임금근로자 2,505명을 대상으로 함

2) 자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2022)”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등 난임치료를 위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하되 그 급여를 국가와 사회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근로자가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일반적으로 난임치료²⁾ 시술에 소요되는 기간은 1회 기준으로 인공수정이 약 5일, 체외수정이 약 6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³⁾ 난임치료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은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현행 난임치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난임휴직을 도입한다면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인력 운용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⁴⁾은 난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2018~2022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재원확보 방안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2) 대표적인 난임치료 방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성에게 배란 유도 약물을 투여하는 배란유도, ②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추어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자궁에 넣어주는 인공수정(자궁 내 정자 주입술), ③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 수정란을 만들어 배아를 형성한 뒤 자궁에 주입하여 착상시키는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이 있음.

3)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질의응답 결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10호)

[표]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근로자 계정, 단위: 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수입	107,599	118,508	198,171	200,074	187,621
	지출	115,723	139,452	204,566	210,577	180,647
	수지	△8,124	△20,944	△6,395	△10,503	6,974
	적립금	94,087	73,101	66,466	56,487	63,379
실업급여 계정	수입	76,407	84,756	136,287	148,356	135,897
	지출	79,157	98,558	138,860	144,242	141,454
	수지	△2,750	△13,802	△2,573	4,114	△5,557
	적립금	38,886	31,726	27,800	43,224	37,604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계정	수입	31,193	33,752	61,884	51,718	51,725
	지출	36,566	40,894	65,706	66,335	39,193
	수지	△5,374	△7,142	△3,822	△14,617	12,531
	적립금	55,201	41,374	38,666	13,263	25,775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세사업장의 비용 및 인력 운용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여성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⁵⁾

문 의 처

02)6788-5539

5) 한편,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휴가 기간) 3일 → 6일, (유급 기간) 1일 → 2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2일) 신설 등